KNLE 보건의료법규 최신법개정 반영문제

KNLE 보건의료법규 2020년 1월 시행일 기준 문제

Page	기존문제	2020년 1월 시행일 기준
	chapter 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238	**30**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대해 옳은 것은? 1) 보건소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구급차 등의 운전자, 경찰공무원, 인명구조요원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이다 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0**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대해 옳은 것은? 1) 보건소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구급차 등의 운전자, 경찰공무원, 인명구조요원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이다 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5)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0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역할이다. 3) 제4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 5) 규칙 제6조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2)	**30**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역할이다. 3) 제4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 5) 규칙 제6조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2)
p.239	**32**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는? 1) 고등학교의 영양사 2)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3)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4)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 종사자 5)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 종사	**32**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는? 1) 고등학교의 영양사 2)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3)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4)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 종사자 5)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 종사
	32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2020.1.16 시행) 6.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정답 1)	**32**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정답 1)

Page	기존문제	2020년 1월 시행일 기준
	chapter 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259	**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군 감염병은? 1)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폐렴구균 2) 페스트, 큐열, 수막구균성수막염 3) 풍진,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4) 매독,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 5)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02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정답 1)	**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급 감염병은? 1) 장티푸스,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2) B형간염, 디프테리아, 매독 3) 인플루엔자, 파상풍, 일본뇌염 4) 후천성면역결핍증,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 황열 5)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02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정답 1)
p.259	**03** 다음 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1) 홍역 2) 디프테리아 3) 파라티푸스 4) 비브리오패혈증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3 제2조(정의)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정답 4)	**03** 다음 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1) 홍역 2) 디프테리아 3) 파라티푸스 4) 비브리오패혈증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3 제2조(정의)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정답 4)
p.260	**04** 다음 중 1군-2군-3군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1) 백일해-파상풍-성홍열 2) 장티푸스-디프테리아-황열 3) 페스트-파라티푸스-한센병 4) 발진티푸스-B형 간염-결핵 5) 콜레라-홍역-수막구균성수막염 04 제2조(정의) • 제1군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 제2군감염병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폐렴구균,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제3군감염병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정답 5)	**04** 다음 중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1) A형간염-신증후군출혈열-임질 2) 발진티푸스-폴리오-레지오넬라증 3) 홍역-B형간염-두창 4) 콜레라-디프테리아-수막구균 감염증 5) 신종인플루엔자-세균성이질-C형간염 04 제2조(정의) • 제1급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제3급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정답 5)

Page	기존문제	2020년 1월 시행일 기준
p.260	**05**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후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였다. 다음 중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해야 할 시기로 옳은 것은? 1) 1군, 5군 : 즉시 2) 1, 2, 3, 4군 : 즉시 3) 1군 : 즉시, 3군 : 매월 1회 이상 4) 1군 : 즉시, 제2·3군 : 매월 1회 이상 5) 1, 2, 4군 : 즉시, 3군과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05**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후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였다. 다음 중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해야 할 시기로 옳은 것은? 1) 1급 : 24시간 이내에 2) 2, 3급 : 24시간 이내에 3) 1, 2, 3급 : 즉시 4) 4급 : 24시간 이내에 5) 1, 2급 : 즉시, 3, 4급 : 24시간 이내에
	05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③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05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③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p.261	**07**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는 감염병은? 1) 편충증 2) 일본뇌염 3) 디프테리아 4) 렙토스피라증 5) 신증후군 출혈열	**07**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는 감염병은? 1) 편충증 2) 수두 3) 디프테리아 4) 유행성 이하선염 5) 인플루엔자
	07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정답 3)	07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정답 3)
p.262	**10** 다음 중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은?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3) 제3군감염병 4) 제4군감염병 5) 제5군감염병	**10** 다음 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3) 제3급감염병 4) 제4급감염병 5) 기생충감염병
	10 제2조(정의)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정답 1)	10 제2조(정의)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정답 1)

Page	기존문제	2020년 1월 시행일 기준
p.264	**16** 감염병예방법상 고위험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의 뜻은? 1)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감염병 2)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3) 동물과 사람 간에 상호 전파되는 감염병 4)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감염병 5)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16** 다음 중 감염병예방법상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병원체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병원체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기생충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5)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16 제2조(정의)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5)	16 제2조(정의)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5)
p.265	**17** 감염병이 발생하여 감염병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역학조사 시 수행되는 구체적인 조사의 내용은? 1) 감염원에 대한 추적만 잘 하면 된다 2)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한다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치료에 목적을 둔다 4) 감염병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감시를 위해 활동한다 5)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단계에서 시행한다	**17**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역학조사 시 수행되는 구체적인 조사의 내용은? 1) 감염원에 대한 추적만 잘 하면 된다 2)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한다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치료에 목적을 둔다 4) 감염병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를 위해 활동한다 5)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단계에서만 시행한다
	17 제2조(정의)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2)	17 제2조(정의)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2)

Page	기존문제	2020년 1월 시행일 기준
p.271	**20** 세균성이질로 의심되는 증상을 가진 자가 일반가정에서 사망하였다. 이때 즉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은? 1) 거주지의 동장 2) 시장·군수·구청장 3) 세대주 및 그 세대원 4)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 5) 세균성 이질을 의심하는 자는 누구나	**20**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은? 1) 거주지의 동장 2) 시장·군수·구청장 3) 세대주 및 그 세대원 4)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 5) 누구나 요구할 수 있음
	20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정답 3)	20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정답 3)
p.286	**33**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옳은 것은? 1) 검역소장 2) 행정안전부장관 3) 질병관리부장관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5)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3**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옳은 것은? 1) 검역소장 2) 행정안전부장관 3) 질병관리본부장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5)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3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정답 5)	33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정답 5)

Page	기존문제	2020년 1월 시행일 기준
p.296	FINAL CHECK 03.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감염병은 표본감시의 대상이다. (○, ×) 06. 감염병에 대한 설명이다. 각 군에 속하는 감염병을 쓰시오. ① 결핵 ② A형간염 ③ 신종인플루엔자 ④ 세균성이질 ⑤ 페스트 ⑥ 파상풍 ⑦ 매독 ⑧ B형간염 1)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 ) 2)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 ) 3)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 ) 4)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 ) ■정답 03 ○ 06 1) ②, ④, 2) ①, ⑦, 3) ⑥, ⑧, 4) ③, ⑤	FINAL CHECK 03.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감염병은 표본감시의 대상이다. (○, ×) ☞ 03 문제 삭제 06. 감염병에 대한 설명이다. 각 급에 속하는 감염병을 쓰시오. ① 결핵 ② B형간염 ③ 디프테리아 ④ 매독 ⑤ 페스트 ⑥ 인플루엔자 ⑦ 세균성이질 ⑧ 파상풍 1)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 2)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 3)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 4)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정답 06 1) ③, ⑤, 2) ②, ⑧, 3) ①, ⑦, 4) ④, ⑥
	chapter 0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p.327	01 HIV 환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의료기관의 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01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정답 3)	01 HIV 환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의료기관의 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01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정답 3)
p.330	09 에이즈로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대통령 2) 시·도지사 3) 관할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 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09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	09 에이즈로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대통령 2) 시·도지사 3) 관할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 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09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

Page	기존문제	2020년 1월 시행일 기준
p.330	**10**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확인했을 때 대처 방안은? 1) 감염인과 그 배우자를 전문 진료기관에 입원시킨다 2) 대처를 하는 데 있어 감염인의 의사는 참고할 필요가 없다 3) 감염인을 진단한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4)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5) 감염인과 그 배우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필요는 없다	**10**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확인했을 때 대처 방안은? 1) 감염인과 그 배우자를 전문 진료기관에 입원시킨다 2) 대처를 하는 데 있어 감염인의 의사는 참고할 필요가 없다 3) 감염인 진단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4)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5) 감염인과 그 배우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필요는 없다
	10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정답 3)	10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정답 3)
p.331	**11**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2)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3)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4) 감염인이 주소 이전을 한 경우 5) 진단 결과로 인해 감염인이 확정된 경우	**11**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2)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3)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4) 감염인이 주소 이전을 한 경우 5) 진단 결과로 인해 감염인이 확정된 경우
	11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11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p.331	**13**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를 진단한 의사나 의료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는? 1) 환자 명부를 작성한다 2) 전문의료기관에 이송한다 3) 검안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4) 감염인과 그 배우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감염인과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한 필요사항을 알린다	**13**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를 진단한 의사나 의료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는? 1) 환자 명부를 작성한다 2) 전문의료기관에 이송한다 3) 검안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4) 감염인과 그 배우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감염인과 그 형제자매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알린다
	13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정답 4)	13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정답 4)

Page	기존문제	2020년 1월 시행일 기준
p.332	**1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진단한 의사가 전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형제 2) 자녀 3) 배우자 4) 부모님 5) 지역주민	**1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진단한 의사가 전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형제 2) 자녀 3) 배우자 4) 부모님 5) 지역주민
	14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정답 3)	14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정답 3)
p.332	**15**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진단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사람은? 1) 감염인의 가족 2) 감염인의 이웃 3) 감염인의 세대주 4) 감염인의 배우자 5) 의사 또는 의료기관	**15**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진단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사람은? 1) 감염인의 가족 2) 감염인의 이웃 3) 감염인의 세대주 4) 감염인의 배우자 5) 의사 또는 의료기관
	15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	15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

KNLE 보건의료법규 2019년 11월 시행일 기준 문제

Page	기존문제	추가개정
	chapter 01 의료법 제65조 개정 2019.08.27, 시행일 2019.11.28	
p.102	**137**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어 면허 취소가 되었을 경우 재교부는 몇 년 이후에 가능한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137**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어 면허 취소가 되었을 경우 재교부는 몇 년 이후에 가능한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137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1년 이후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후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3년 이후 – 제8조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제6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우 ■정답 2)	137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1년 이후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후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년 이후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제8조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제6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우 ■정답 3)
p.102	**138** 의료인 면허 대여 시 법정 최대 벌칙은? 1) 면허 정지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5) 면허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의료인 면허 대여 시 법정 최대 벌칙은? 1) 면허 정지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5) 면허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제8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정답 5)	138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정답 5)

Page	기존문제	추가개정
p. 103	**139** 정간호사는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발견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면허 취소 후에 언제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가? 1)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2) 시험에 재응시하여 면허를 교부받는다 3)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3년간 수련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4) 면허증 대여로 인한 면허 취소 후 1년 후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5) 면허증 대여로 인한 면허 취소된 날부터 2년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39** 정간호사는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발견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면허 취소 후에 언제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가? 1)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2) 시험에 재응시하여 면허를 교부받는다 3)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3년간 수련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4) 면허증 대여로 인한 면허 취소 후 1년 후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5) 면허증 대여로 인한 면허 취소된 날부터 3년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39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 2년 이후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정답 5)	139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 1년 이후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후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년 이후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제8조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제6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우 ■정답 5)
p.114	**156** 처벌의 정도가 다른 행위는? 1) 면허증 대여 2) 금지된 무면허 의료행위 3) 전자처방전에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경우 4)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5) 의료·조산·간호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한 경우	**156** 처벌의 정도가 다른 행위는? 1) 면허증 대여 2) 금지된 무면허 의료행위 3) 전자처방전에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경우 4)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5) 의료·조산·간호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한 경우
	156 제87조(벌칙) 1), 2), 3),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5)	156 제87조의2(벌칙) 1), 2), 3),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5)